

제 호

영 치 증

성 명 :

주 소 :

자동차의 종류 :

자동차의 등록번호 :

1. 위 자동차는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
다.
2.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
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○○ 시、군、구 ○○ 과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
제합니다.
3.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
0조제4항、제8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
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· 영치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· 단속공무원

소 속 : ○○ 시、군、구 ○○ 과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)